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 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4. 12. 17  
시민보사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11월 11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4년 11월 25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30회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제2차 시민보사위원회(1994년 12월 17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이제는 인구증가율이 1% 이하로 인구증가억제사업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가족계획사업의 재활용 사업비를 금년말까지만 징수하고 '95년 1월 1일부터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가족계획사업의 재활용사업을 위한 보급수수료징수를 완전폐지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가족계획사업의 재활용사업비로 자궁내장치 시술 2,000원, 콘돔(1갑) 200원, 먹는 피임약(1싸이클) 230원을 징수하였으나, 이제는 인구증가율이 1% 이하로 인구증가 억제사업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금년말까지만 수수료 징수하고 '95년 1월 1일부터 보급수수료 징수를 완전폐지.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정부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피임약제기구 보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가족계획사업의 재활용사업을 위하여 1990년 보건사회부 훈령인 가족보건업무규정에 의거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 및 진료비의 징수와 가족계획사업의 재활용사업을 위한 수수료 지침에 의거 우리구의 조례 제2조 2항 2호와 제4조에 이를 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94. 9. 2 서울시장으로부터 이제는 인구증가 억제사업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고 향후 인구의 질적사업을 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각구에서는 '94년도 사업 종료인 금년 말까지 피임약제기구 및 진료비의 징수와 가족계획사업의 재활용사업을 위한 수수료 지침을 적용토록 하고 '95. 1. 1부터는 완전 폐지하라는 지시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규정을 삭제 정비하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을 요합니다.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4
----------	-----

제출년월일 : 1994.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개정이유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피임약제기구 보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가족계획사업의 재활용사업비로 자궁내장치 시술 2,000원, 콘돔(1갑) 200원, 먹는 피임약(1싸이클) 230원을 징수하였으나, 이제는 인구증가율이 1% 이하로 인구증가억제사업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금년말까지만 수수료를 징수하고 '95년 1월 1일부터 본 개정조례안 같이 가족계획사업의 재활용사업을 위한 보급수수료 징수를 완전폐지 개정하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가족계획사업의 재활용사업비로 자궁내장치 시술 2,000원, 콘돔(1갑) 200원, 먹는 피임약(1싸이클) 230원을 징수하였으나, 이제는 인구증가율이 1% 이하로 인구증가억제사업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금년말까지만 수수료를 징수하고 '95년 1월 1일부터 보급수수료 징수를 완전 폐지

#### 3. 관계법령

- 가족보건 업무규정 제14조 2항(피임약제등의 보급)
- 보건소법 제4조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  
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 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중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p> <p>①〈생 략〉</p> <p>②다음 각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정수한다.</p> <p>1.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 제증명 (개정 90. 2. 15)</p> <p>2.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p> <p>3. 항결핵제 보급</p> <p>4. 유료접종</p>	<p>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p> <p>①〈현행과 같음〉</p> <p>②다음 각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정수한다.</p> <p>1.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 제증명 (개정 90. 2. 15)</p> <p>2. 〈삭 제〉</p> <p>3. 항결핵제 보급</p> <p>4. 유료접종</p>
현 행	개 정(안)
<p>제4조(세입재활용)</p> <p>①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의 70%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으로, 30%는 구수입으로 하며 시수입은 대한가족계획협회 서울특별시지부에 보조하여 가족계획사업에 재활용하여야 하고 구수입은 가족계획요원 행정비로 사용한다. 다만,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자궁내피임장치 시술요원이 시술하는 경우 시술비를 구세입 조치하여 가족계획사업에 재활용하고 자궁내장치 수수료중 1건당 1,000원은 전액 불임수술사후관리비(대한불임시술협회)로 사용한다.</p>	<p>제4조(세입재활용)</p> <p>①〈삭 제〉</p>

현				행	개 정 (안)
<별 표> 수 수 료 액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삭 제>
2. 피임약 제 및 기 구보급	가. 피임약 제 (21정 또 는 28정 입) 나. 콘돔(6개 입)	1싸이클	23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계획요원 또는 대한가족계획협회직원 이외의 자를 통하여 보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먹는 피임약 330원, 콘돔 300원으로 하고 이중 100원은 실제보급하는 자의 수입으로 한다.</li> <li>• 자궁내장치 수수료중 1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임시술 사후관리비 (대한불임시술협회) : 1,000원</li> <li>- 가족계획사업 재활용비 : 1,000원으로 한다</li> </ul> </li> </ul>	

**철도변녹지시설지역시설변경에 대한 건의안**

의안 번호	287
----------	-----

제출년월일 : 1994. 12. 20.  
제 출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영등포 618-111번지 일대 17,867㎡(녹지조성 : 5,136㎡ 미보상 : 12,731㎡)는 장기투자사업으로 소요예산이 200억이나 되나 '95년 5억 책정 등으로 볼 때 40년이 소요되는 바 본 사업책정은 불합리하므로 철도연변 시설녹지를 주차장시설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건의안을 제출함.

**2. 주요골자**

당초 본 사업은 시비보조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나 '95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시설자금 115억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철도연변 시설녹지를 주차장 시설로 변경하면 주차난 해소 및 소요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음.

**건 의 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중 철도변녹지시설 예산안이 장기투자사업으로 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연 5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보상업무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서 당초 이사업은 시비보조금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나 '9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시설자금이 115억이 확보되는바 철도변 시설녹지지역을 변경하여 주차장 시설을 설치함으로 철도변 토지보상도 일부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주차장 시설확보도 할 수 있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사업변경을 요청하오니 심도있게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1994. 12.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일동